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

의안번호	46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1998. 11.
제출자 제천시장

1. 근 거

- 지방자치법 제125조 (결산)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(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)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(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사항)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(세입세출결산의 제출)

2. 결산내용 요약(일반회계및특별회계 포함)

- 예산규모 : 273,178,067,000원

구 분	금 액	비율(%)	비 고
실 수납액	264,543,768,666	96.8	
실 지출액	190,891,326,210	69.9	

○ 이 월 액

구 분	이 월 액	비 고
계	73,652,442,456	
명 시 이 월	6,481,655,000	
사 고 이 월	19,413,502,000	
계 속 비 이 월	25,162,192,000	
보조금 사용잔액	350,139,000	
순 세 계 잉여금	22,244,954,456	

3. 결산내용

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의회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득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

-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242,353,051,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,825,016,000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273,178,067,000원이며
- 이중 수납액은 264,543,768,666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96.8%를 수납하였습니다.

내역을 살펴보면

(단위 : 원)

구 분	수 납 액	비 고
계	264,543,768,666	
지 방 세 수 입	22,176,168,870	
세 외 수 입	52,766,332,400	
지 방 교 부 세	50,830,000,000	
국도비 보조금	71,784,285,000	
지 방 양 여 금	16,246,212,000	
지 정 재 원	12,400,000,000	지방채
공기업특별회계	20,900,123,970	
기타 특별회계	17,440,646,426	

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
□ 세출예산은 예산총액 273,178,067,000원에서
지출이 190,891,326,210원으로 예산액대비 69.9%이며,
그 지출액을 내역별로 살펴보면

(단위 : 원)

구 분	지 출 액	비 고
합 계	190,891,326,210	
일 반 회 계	소 계	170,623,495,530
	일 반 행 정 비	32,371,267,760
	사 회 개 발 비	46,647,651,570
	경 제 개 발 비	89,098,496,220
	민 방 위 비	975,308,390
	지원및기타경비	1,530,771,590
특 별 회 계	소 계	20,267,830,680
	공기업특별회계	13,959,544,200
	상 수 도	12,945,612,440
	공영개발사업	1,013,931,760
	기타 특별회계	6,308,286,480
	하 수 도 사 업	1,194,545,400
	주 택 사 업	1,906,147,360
	의료보호기금	1,969,418,850
	영세민생활안정기금	30,000,000
	주민소득지원	180,049,770
	농공지구조성사업	829,017,340
	도시교통사업	199,107,760

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
- 잉여금은 세입예산 결산액(실수납액)대 세출예산액(실지출액)을 공제한 차인 잔액은 73,652,442,456원이며, 이 금액은 익년도(1998년도)로 이월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원)

구 분	잉 여 금 내 역	금 액
계		73,652,442,456
명시이월비	청소년수련관건립, 문화마을조성사업등 20건	6,481,655,000
사고이월비	분뇨처리시설확충등 112건	19,413,502,000
계속비이월	옥순대교가설공사등 3건	25,162,192,000
국도비집행잔액	국도비집행잔액	350,139,000
순세계잉여금		22,244,954,456

- 다음은 199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1. 일반회계 가. 세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외수입 수납액이 예산액의 192.2% 증가는 당초예산 편성시 각 부서의 세입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적게 책정한 결과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○ 한번 부과된 세금은 강력한 징수 활동과 체납자관리에 대한 특별 대책이 요구됨 ○ 주민세 세원의 타지역 유출을 막아 우리시에 납부되도록 조치하는등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외수입 증가의 주요원인은 임시적 세외 수입의 증가 및 순세계잉여금과 시·도비의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이며, 임시적 세외수입의 특성상 이월비의 정확한 세입추계가 곤란하여 적게 책정되었으나, 이후는 세입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○ 체납액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(연간4회) • 채권확보를 위한 전국단위 재산조회 •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• 압류재산 공매처분등 ○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 및 각종 자료수집을 통하여 자진 납부자와 미납자의 철저한 대사로 주민세의 타지역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 정 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</p>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나. 세출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.3%이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년도 지출이 전무한 예산도 상당 포함되어 있음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시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편성하여 집행 ○ 향토방위작전 긴급소요장비(휴대용 탐조등등)지원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부서에서 해당지역의 현지확인 절차가 없었음 ○ 시정발전 유공자의 표창부상품 시계구입비를 예산확보액 보다 5,541천원을 초과 집행하였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97년도 불용액은 96년도 5.2%보다 1.9% 낮아졌으며, 이는 대부분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나, 앞으로도 집행사항을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○ 향토부대 장비지원은 도방위협의회와 군기관과 사전협의된 국가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현지확인을 미실시 하였으나, 추후에는 현지확인후 지원하겠음 ○ 연말 포상금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포상금내 각종 부기예산의 예상잔액으로 시상품을 구입하였으나, 추후에는 반드시 예산확보후 집행하겠음 	<p>기획담당관실</p> <p>자치행정과 (구.총무과)</p> <p>"</p>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위험시설 신고보상용 전화 카드 제작비를 당초예산보다 1,259천원을 초과 집행하였음 ○ 개화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비 예산을 '97.5.17일 1회추경시 5,513천원을 확보하였음에도 '97.7.29일 28,723천원을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로 예산전용하는등 예산확보시 정확성이 미흡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7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만으로는 전화카드를 제작할 수 없어 부족예산을 2회추경에 요구하였으나 미계상되어, 예산부서 협의 및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에서 대체 하였던 것이나, 추후에는 편성된 예산만 집행도록 하겠음 ○ 향후 예산편성시는 지침에 의거 정확히 편성토록 하겠음 	<p>건설과 (구.민방위재난관리과)</p> <p>환경관리사업소 (구.하수과)</p>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나. 세출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.3%이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년도 지출이 전무한 예산도 상당 포함되어 있음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시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편성하여 집행 ○ 향토방위작전 긴급소요장비(휴대용 탐조등등)지원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부서에서 해당지역의 현지확인 절차가 없었음 ○ 시정발전 유공자의 표창부상품 시계구입비를 예산확보액 보다 5,541천원을 초과 집행하였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97년도 불용액은 96년도 5.2%보다 1.9% 낮아졌으며, 이는 대부분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나, 앞으로도 집행사항을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○ 향토부대 장비지원은 도방위협의회와 군기관과 사전협의된 국가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현지확인을 미실시 하였으나, 추후에는 현지확인후 지원하겠음 ○ 연말 포상금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포상금내 각종 부기예산의 예상잔액으로 시상품을 구입하였으나, 추후에는 반드시 예산확보후 집행하겠음 	<p>기획담당관실</p> <p>자치행정과 (구.총무과)</p> <p>"</p>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위험시설 신고보상용 전화 카드 제작비를 당초예산보다 1,259천원을 초과 집행하였음 ○ 개화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비 예산을 '97.5.17일 1회추경시 5,513천원을 확보하였음에도 '97.7.29일 28,723천원을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로 예산전용하는등 예산확보시 정확성이 미흡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7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만으로는 전화카드를 제작할 수 없어 부족예산을 2회추경에 요구하였으나 미계상되어, 예산부서 협의 및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에서 대체 하였던 것이나, 추후에는 편성된 예산만 집행토록 하겠음 ○ 향후 예산편성시는 지침에 의거 정확히 편성토록 하겠음 	<p>건설과 (구.민방위재난관리과)</p> <p>환경관리사업소 (구.하수과)</p>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2. 기타특별회계 (하수도사업) 가. 세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용촉진교육생 및 학원 수강료 수당을 지급하면서 적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훈련수강료 및 수당지급은 훈련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매월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, 당시 훈련기관의 부당청구에 따른 개인별 확인작업으로 인해 지급기일이 지연되었으며, 차후에는 훈련기관의 훈련비 청구 및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적정 기일을 준수 하겠음 	공업경제과 (구.지역경제과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수사용분 사용료 결정과정에서 총 1,470건중 계량기 부착 430건, 기타 1,040건은 계량기 없이 인정 부과하여 조사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정되어야 할 것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수사용료 부과기준은 영업용은 계량 기상 사용량, 일반가정은 인구1인당 3m³ 기준의 인구수로 사용량을 산정하여 고지 부과하고 있으나, 향후 고지 발부시는 인구수 조사에 더욱 적정을 기하겠음 	환경관리사업소 (구.하수과)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(주택사업) 가. 세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대료 월할계산시 업무편의상 선수납하고 관리비 부과일자에 후징수결정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수납업무의 제규정에 부합되도록 수납 즉시 징수결정하여야 할 것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납업무 제규정에 부합되도록 징수결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음. 	도시건축과 (구.건축과)
나. 세출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사용시에 정확한 근거자료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, 전체예산액의 80%에 해당하는 9,882,35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추후 예산편성시 세밀한 주의를 요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채권, 채무상환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. 	"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(영세민생활안정기금) 가. 세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데 누증되기 전에 원만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이며, 융자금 미수금이 83년도부터 체납된 것이 있는데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별 회수방법 및 처리방안 강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일소 하겠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단계 : 읍면동별 체납액징수반 편성·운영 • 제2단계 : 본청 징수대책반 편성·운영 • 제3단계 :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조치 	사회복지과 (구.사회과)
(농공지구조성사업) 가. 세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수납액이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,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불황등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납세능력 상실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은닉재산의 발굴과 출장징수반 편성운영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음. 	공업경제과 (구.지역경제과)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(도시교통) 가. 세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외 수입인 교통유발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잡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점차 누중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균원적인 정수대책이 요구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발부 2회, 압류예고 통지 1회를 실시하여 납부독려하였고, 미납자는 전수 재산압류조치 하였으며, 이후 체납분에 대하여도 독촉장을 재고지 하는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음. 	교 통 과 (구.교통행정과)
나. 세출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용액 근절을 위한 균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동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확정시는 자금소요가 예상되며, 자금소요시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등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	"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3. 채권채무 가. 채 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되고 있어 열악한 재정형편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일반회계 분야의 채무 행위를 줄일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7년도 채무 행위액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100억원, 통합시 청사증축공사비 22억원, 동현동청사 신축비 2억원등 지방채발행액이 124억원, 제천~ 어상천간 철도건널목개량공사 사업비 부족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액이 30억원으로 총 154억원(원금기준)이며, 이는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도로망구축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기 위하여 '98년도에는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겠음. 	기획담당관실
4. 물 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품사용부서와 총괄부서와의 장부상 보유현황이 항상 일치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수물품 수급계획시 사용부서의 대장과 총괄관리부서의 대장을 확인 대조하여 정리하고 각실과 물품전산대장을 출력 사용부서와의 대장을 년2회 대조하여 정리하겠음 	회 계 과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5. 기타의견 가. 폐기물처리 및 수수료 징수업무 처리에 대하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록환경과 환경미화사의 일반 쓰레기는 계량없이 차량형식 톤수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고, 이러한 결정에 대한 내부결재나 관리자의 서면 승인서류도 비치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어 과다징수및 과소징수 의혹과 시비의 논란이 예상되므로 투명성 제고 필요 ○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수거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 하여야 할 것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입 폐기물을 전량 계량하여 수수료를 부과 하겠으며, 쓰레기매립장 운영규정을 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수수료 부과에 따른 의혹이나 시비의 논란이 없도록 하겠음 ○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'98. 9. 1일부터 수거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. 	환경관리과 (구.청소과)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쓰레기매립장의 차량출입대장의 기록이 정확치 않고, 관리자의 결재도 받지 않고 있어 전차량이 계량되었는지 투명성이 없다고 하겠음. ○ 또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면세사업자 이므로 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수불시 공공용 봉투에 대해 읍면동을 일관성 있게 통일 시켜야 할 것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앞으로는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쓰레기 매립장의 차량출입대장을 정확히 기록하겠으며, 전차량을 계량하고, 계량기록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. ○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철저히 징구하겠으며, '99년도 공공용 쓰레기봉투 표준수불대장을 제작하여 일괄 배부하겠음 	환경관리과 (구.청소과) "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나. 국·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하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종재산 대부료와 관련 점유자들이 정확한 면적 산정을 위해 측량요구시 측량수수료가 대부료를 초과하므로 실익이 없어 측량을 못하고 있으며, 이러한 경우 자체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대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타 점유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법집행의 공정성 유지가 타당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적측량은 지적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인 지적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사무처리규정제70조에 의해 측량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업무의 중복, 형평성 문제, 민원폭주등으로 자치단체에서 측량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, 이후에는 자체전문인력과 협의하여 현황측량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	회 계 과
다. 주민세에 대하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제천세무서에 등재된 지점은 자진납부 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의 경우 지점설치 신고의무가 <u>없으므로</u> 현실적으로 피의 어려우나 읍면동의 가설 건축물축조신고대장을 활용하면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, 주민세 납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읍면동의 가설 건축물대장 및 지출부서의 회계서류, 기타 각종자료를 통한 세적자료의 관리철저로 균등화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	세 정 과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라.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에 대하여	<p>○ 농정관리, 원예유통관리, 축산관리등 국·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계산서 작성을 소홀히하여 교부하며, 자재 및 시설공사 공급자등의 국세 대부분이 누락되고 또한 법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누락되고 있음</p> <p>따라서 보조금 집행후 사후 증빙을 제출받는 부서에서 분기별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허위 영수증 등의 제출이 줄어들어 사후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</p>	<p>○ 농림사업규정에 의거 보조금집행시 사업자 등록증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세부규정이 없이 간이영수증 및 입금표등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나</p> <p>'98.7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이 개정되어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,</p> <p>향후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자 및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</p>	농 정 과 농축유통과 (구·원예유통과)

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건 명	지 적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파.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주택 관리비의 운영자금 관리집행에 있어서 한번도 결산 내용 또는 특별기금 명목의 퇴직금, 감가상각비, 영선수리 적립금 등에 대한 적립여부를 확인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조치가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공동주택관리 위탁업체인 충북은행 공영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, 매월 비둘기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직원임금 및 수용비 지출상황표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여 왔으나, 이후에는 지적사항인 퇴직금, 감가상각비, 영선수리적립금 등에 대하여는 별도감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	도시건축과 (구·건축과)